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2003년 8월 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무상한연령 연장개정을 요구하는 고용직공무원 및 직장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해당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유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3세”에서 “57세”로 함.
(안 별표)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4. 검토의견

- 고용직공무원이란 일반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과 구별되는 특수 경력직공무원중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는 과거 경찰소속의 방범원을 각 자치단체 소속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방범원 임용시 연령제한이 53세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 까지 계속되었으며
- 2003. 8. 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되어 고용직이 사하구 정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일반직공무원의 연령제한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부산시 각 구의 정년제한이 대체로 57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보조를 맞추어 주므로 해당직원의 사기를 양양할수 있으리라 생각됨.

2003.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